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교육실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434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	8
참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 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현행	개정안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u>안전교육</u>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 ----- ----- --- <u>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u> --- -----.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안전교육</u> 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u>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u> ----- ----- -----.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1)는 “현장실습”을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7조2)는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

-
-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2)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임.⁴⁾

교육부도 2017년 11월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해 조기 취업 형태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이 아닌,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개편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⁵⁾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비교 >

구 분	근로중심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 이내
운영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현장실습 프로그램	없음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활용
기업현장교사	없음	있음(지도책임 부여)
현장실습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혼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신분	학생, 근로자 혼용	학생
급여/수당	급여 지급	실습 수당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5. 각종학교

4) 교육부 보도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10.19.

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235호)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법, 근로기준법 등	직업교육훈련법 (근로기준법 준용)
-------	------------------	-----------------------

※2018년부터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업준비과정으로 운영 중
자료: 교육부(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그러나 동법 제7조의26)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운영기준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동법 제9조의47)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항),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책무 조항(제2항)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등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동법 제9조의58)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현장실습생에게 현장

-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인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교육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현장실습생의 안전 뿐만아니라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전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권익침해 대처 방법 등을 사전교육하고 있음.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 필수교육 현황⁹⁾ >

구분	내용	비고
사전교육	현장실습제도 이해, 안전사고 예방, 권익침해 대처 방법 등	-
실습직전 특별교육	① 하이파이브 온라인 교육(3차시) ② 학교전담 노무사 소규모 대면교육 ③ 한국산업보건공단의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	택1
입문교육	현장실습 개시 직후 산업체 의무교육	-

자료: 교육부

덧붙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현장실습이 교육훈련과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위험 기피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육적 목적보다 학교와 산업체 각 기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높은바, 이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 아래에서도 권리침해가 상존한다는 정부평가¹⁰⁾

9)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권익침해 대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각 단계별 교육 실시 및 매년 현황 점검

※(교육이수자) ('18년) 101,875명 → ('19년) 94,349명 → ('20년) 85,749명 → ('21년) 85,139명 → ('22년) 77,374명 → ('23년) 67,298명

10) 강문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2.12.

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장실습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현장실습생이 근로관계, 노동권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실습생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미 수행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함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산업체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노동’이 아닌 ‘학습’이므로 현장실습생 권리 역시 ‘노동 인권’ 또는 ‘노동권’이 아닌 ‘학습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의 이윤 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 인력으로 활용되는 등 부당하게 학습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구체적·실질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노동인권교육’을 ‘권익보호 교육’ 또는 ‘권익침해 예방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93

참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 추진 배경

-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 증대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의식을 제고하고,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학생 권익 보호

□ 2023년 추진 현황

- (교육내용)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12시간)

구분	주요 내용
<모듈 1> 노동과 직업 (2차시)	•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자의 의미와 주변의 다양한 노동자 • 건강한 직업관과 진로 탐색 - 직업의 의미와 가치, 4차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과 직업의 변화, 건강한 직업관과 진로 탐색
<모듈 2>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4차시)	• 현장실습생, 근로자, 사용자의 차이 - 현장실습생, 근로자, 사용자 차이, 현장실습생의 역할과 권리, 현장실습장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에티켓 • 현장실습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 - 현장실습시간의 이해,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시간 개념과 내용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일과 휴가 • 현장실습수당과 임금의 차이 - 현장실습수당의 이해, 임금의 정의와 최저임금, 임금의 지급 방법과 임금체불 시 해결방법 • 청소년 권익보호 - 현장실습에서의 주요이슈, 청소년 취업 시 제한사항(취업연령 제한, 취업금지·제한업종 등), 청소년 노동 시 제한사항, (연장·야간, 휴일근로의 제한/필요서류 등)
<모듈3> 현장실습과 산업안전	• 학습중심 현장실습 - 학습중심 현장실습 표준협약,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보호 • 산업안전보건

보건 (6차시)	-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적인 지식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법적기준 및 준수사항,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내용(사망재해 5대 유형) • 실습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실습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실습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안전표지판 이해, 실습현장 안전의식 고취 방안 • 실습현장별 산업재해 유형과 예방방법 - 실습현장의 일반적 재해 발생 특성, 실습현장의 업종별 재해 유형과 예방 • 실습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대처방법 - 현장실습중 산업재해 대처방법 · 절차, 현장실습중 산업재해 보상의 유형과 방법 등 • 현장실습 중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처 - 현장실습기관에서의 괴롭힘 이해와 대처, 현장실습기관에서의 성희롱 이해와 대처, 현장실습기관에서의 성폭력 이해와 대처
----------------------------	---

○ **(수강방법)** <https://youth.koreatech.ac.kr> 접속 후 수강

○ **(교육기간/대상)** 연중 / 직업계고 3학년

※ 2023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이수자 :
63,567명

○ **(교육기관/예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원